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딥페이크 정보 삭제〉

■ 차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38호)

2026.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및 기술적 조치 의무화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차지호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2. 3.

다. 회 부 일 : 2026. 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에 대한 삭제·차단 및 기술적 조치 의무화(안 제44조의2 및 제76조제4항)

가. 개정안 요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을 하도록 하고(안 제44조의2제7항), 아동·청소년 대상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또는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경우 삭제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한 즉시 삭제·차단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8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차단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9항).
-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삭제·차단 및 조치 의무를 같은 조 제2항의 삭제·임시조치 의무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0항)
- 삭제·차단 및 기술적 조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한 자에게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6조제4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정보통신서비스는 제공자는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⑧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또는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인지한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삭제되거나 차단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76조(과태료) ① ~ ③ (생략) <u><신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제4항~~ ——— ————— ————— —————.

다. 검토사항

-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의 확산에 따라 피해자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차단 강제가 어렵고, 재게시·반복게시 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를 위한 법률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차단의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의무를 확립하기 위하여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이하 “딥페이크방지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성인 피해자의 삭제요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추가하는 동시에, 삭제·차단된 정보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함.
- 최초 게시 이후의 유포를 막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2차 가해 방지의 핵심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서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참고로, 딥페이크 방지법안은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이 재게시·반복게시·미러링·편집 또는 추천 알고리즘을 통하여 확

산되는 일체의 정보를 딥페이크방지법안에서 ‘확산 콘텐츠’로 정의하며 그러한 확산콘텐츠의 삭제 및 기술적 조치 의무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음.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제7조(확산콘텐츠의 삭제 및 기술적 조치) ① 플랫폼사업자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삭제 또는 차단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확산콘텐츠에 대하여도 일괄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사업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시값 비교,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 법체계 하에서 충분히 개정안에 따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이 신설하는 규정은 ①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의 삭제·차단 의무, ②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또는 성적 디지털 위조물에 대한 인지 즉시 삭제·차단 의무, ③ 삭제·차단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 의무의 세 가지임.
-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은 이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청소년유해

매체물 또는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내용에 대한 지체없는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¹⁾, 전기통신사업법도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지체없이 삭제·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이미 부여하고 있으며²⁾, 딥페이크 방지법안의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은 ‘불법촬영물등’에 포함되므로, 딥페이크방지법안 및 그 의결을 전제로 성립하는 개정안은 사실상 기존 법체계에서 규제하던 사항을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한다)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규율하고 있어 내용이 중복되는 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참고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³⁾이 이미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일단 임시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규제 체계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바, 해당 법 개정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둘째, 과태료 규정이 기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부과 액수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존의 과태료 부과 액수와 비교할 때 비례성이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과태료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제재(행정벌)의 일종으로, 행정벌 중에서도 행정질서벌이자 금전벌에 해당되며 그 금액 산정 시 일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구체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무위반 행위와 그에 대한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하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어,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편차가 과도하면 제재조항 간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함⁴⁾.
- 정보통신망법은 과태료에 대하여 제76조에서 그 상한을 제1항에서

3) 의안번호 제2215242호,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4) 법제기준과 실제(2024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804p, 810p

3천만원, 제2항에서 2천만원, 제3항에서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1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규정은 법령 위반에 따른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환수를 목적으로 하는 과징금과 달리, 일정한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것이므로 의무 위반자의 매출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통상의 입법례에 따를 때 과징금 액수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도 시행령 등에 위임하여 세부적으로 위반 횟수 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정보 삭제·차단과 관련하여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와 개정안의 규제가 중복될 뿐 아니라 유사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의 경우에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여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태료의 목적을 고려할 때 동일 위반 행위에 대해 동일한 액수로 제재하는 입법례를 고려하여 액수를 정액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경찰청은 피해자등으로부터 삭제요청을 받거나 인지하여 정보를 삭제한 경우, 추후 수사기관 증거보전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증거보전을 위한 보전조치가 필요하고, 같은 의원 발의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제9조제2항에 의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게시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보를 복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본 보전조치와 유사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정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확립하여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과태료와 같이 불이익 처분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 의무 등 확산 방지 의무의 범위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해당 조문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개정안이 본래 국가가 수행하여야 할 ‘AI생성물의 사법적 위법성 판단 및 유통 방지 의무’를 민간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외주화하는 것으로 부당하며,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한 과잉삭제를 유도하여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되는 점, EU 디지털 서비스법

등 해외 입법례와 비교 시 단기간에 고정된 삭제 시한 등 플랫폼에
과도한 의무를 규정한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8